

# 삭제되지 아니한 개인정보와 인터넷 사회의 리스크에 관한 담론\*

이 호 용\*\*

## ◀ 目 次 ▶

- I. 들어가면서
- II. 미디어환경의 변화 속에서 망각과 기억의 가치
- III. 프라이버시의 진화 속에서 잊힐 권리가 갖는 의미
- IV. 잊힐 권리,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 V. 잊힐 권리의 제도구상: 누가,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가?
- VI. 맺으면서

(논문투고일 : 2015.07.24. / 논문심사일 : 2015.09.07. / 게재확정일 : 2015.09.18.)

## I. 들어가면서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인터넷 사용기록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지문처럼 남는다. 각종의 개인 정보가 통제할 수 없도록 난무하는 인터넷 세상에

\* 이 논문은 2015.6.19. 중국 청도에서 열린 단국대법학연구소/한국법제연구원/단국대BK+ 연구사업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주제: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의 비교법적 과제)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법학박사.

서는 때로는 좋은 의도로 혹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던 것이 이제는 지우고 싶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은 인생의 낙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세탁소’나 ‘디지털 장의사’로 불리는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 대행 서비스가 신생 온라인 업종으로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세탁소는 의뢰인의 유출된 정보를 찾아서 삭제하거나 과거에 곳곳에 남긴 ‘디지털 발자국’들을 지워주는 대리인 역할을 한다. 이들 업체의 서비스 범위는 개인 블로그와 카페, 커뮤니티 등 인터넷 기록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기록, 다른 이들이 남긴 비방 게시물, 사진과 영상물 파일 등 고객이 원하는 모든 기록을 대상으로 한다. 인터넷 기록은 취업 과정뿐만 아니라 이성교제이나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개인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역할을 한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SNS를 통하여 취업희망자의 성향을 조사하기도 하고 소개팅을 하기 전에 상대의 SNS를 몰래 검색해 보기도 한다. 또 이혼 소송에서 SNS에서 얻은 증거물을 상대측에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sup>1)</sup> ‘디지털 장의사’는 사망한 사람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각종 웹사이트 아이디 등을 쉽게 파악해 정리하는 서비스를 한다. 평소 죽음에 대비해 각종 인터넷 계정과 기록들을 정리하는 이들은 흔치 않다. 그러나 이쯤 되면 이메일과 블로그, 개인홈페이지의 각종 기록들 중 가족에게 남겨줄 것과 삭제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만하다. 현재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마다 규정과 처리 방법이 다르다. 구글은 휴면계정 관리자 서비스를 통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자신의 콘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미리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사전에 받을 사람 등을 설정해야 한다. 야후는 망자의 콘텐츠를 정리해주는 ‘야후 엔딩’ 서비스를 최근 선보였다. 페이스북은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망자의 계정을 기념 계정으로 보존해준다.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포털들은 유족에게 가입 정보를 제공할 뿐 관리 권한을 부여하지는

1) 한 결혼 정보업체의 설문조사에서는 소개팅 전 상대의 SNS를 몰래 검색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7%나 되는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했다. 미국 취업정보회사인 ‘캐리어빌더’가 지난 2009년 주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 2천6백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사 담당자 의 45%는 SNS로 취업 희망자의 성향을 조사한다고 답변했고, 이들 중 35%는 취업 희망자 가 자신의 SNS 때문에 채용 전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 5곳 중 한 곳은 채용 시 지원자의 SNS 내용을 참고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디지털 나라의 ‘잊혀질 권리’를 찾아서” 시사저널 2011.5.25.자.

않기 때문에 유족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재주껏 알아내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보관리 대행업체의 호황은 자연스레 ‘잊힐 권리’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제 ‘잊힐 권리’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도 어색하지도 않은 익숙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공익에 영향이 없으면서 동시에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잊힐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적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공익이라고 할 것인지, 사생활 침해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다. 또 잊힐 권리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 되면 인터넷 사용자의 알권리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잊힐 권리가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된 배경에는 최근 Web 2.0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Web 1.0 시대에는 정보의 제공에 있어 포털 등이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단방향으로 제공하고 사용자들은 해당 카테고리를 통해 자료를 검색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수동적 입장을 취하였으나, Web 2.0 시대에는 사용자 자신에 의한 정보 발신이 인터넷에 흐르는 정보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즉 단순히 단방향으로 정보를 제공받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보를 생산하여 쌍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으로 변화된 것이다.<sup>2)</sup> 정보는 원래 자유롭게 흘러 다니는 (flow) 속성을 가지고 있다. Web 2.0 시대는 그 자유로움이 촉진되지만 그로인하여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바야흐로 잊힐 권리라는 사회적 의제를 통하여 인터넷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리스크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 주제에 관한 연구에 관해서는, 기존에는 잊힐 권리의 기본권성에 관한 연구,<sup>3)</sup> EU의 잊힐 권리에 관한 소개나 국내로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연

2) Web 1.0 시대는 ① 웹은 미디어로서 기능하며 ② 대중시장의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③ 지식생산은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④ 따라서 중앙집권적 권력관계를 형성하게 됨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비해 Web 2.0 시대는 ① 웹은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며 ② 개인화된 시장의 생산소비자(prosumer)를 대상으로 하고 ③ 지식생산은 사용자들에 의해 집단 지성으로 형성되고 ④ 따라서 분산형 권력관계를 형성하게 됨을 특징으로 한다.

3) 정영화, “헌법상 정보프라이머시로서 잊혀질 권리”, 법학논고 제39집, 경북대법학연구원, 2012; 지성우,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언론중재 2011 여름호, 2011; 조소영, “잊혀질 권리: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공법연구 제41권제2호, 한국공법학회, 2012; 정진숙, “정보인권으로서 표현의

구4)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사회의 중요한 리스크로 자리 잡은 삭제되지 아니한 개인 정보에 대하여 그 논의의 배경이 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망각과 기억에 대한 가치 변화, 진화하는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잊힐 권리가 갖는 의의 등을 정리한 다음, 잊힐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잊힐 권리에 대한 판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와 같은 제도적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논의해 봄으로써 삭제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로 인한 인터넷 사회의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담론(談論)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 II.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망각과 기억의 가치

### 1. 잊힐 권리? 삭제할 권리? 목록화하지 않을 권리?

#### 1) 좁은 의미의 잊힐 권리와 넓은 의미의 잊힐 권리

원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sup>5)</sup>)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법적 개념인

---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에 관한 논의: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 제48호, 2015; 정상기,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과학기술법연구 제18권제3호, 2012; 박정훈,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프라이버시”, 공법학연구 제14권제2호, 2013; 이민영, “이른바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법학논총 제20권제1호, 조선대법학연구원, 2013 등.

- 4) 홍명신, 정보의 웰다잉을 향한 시도-잊혀질 권리의 국제동향, 언론중재 2011 여름호, 2011; 함인선,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고찰-EU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2012.8.호; 황해륙, “잊혀질 권리에 대한 소고: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44집, 경북대법학연구원, 2013; 전은정·염홍열, “잊혀질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U법 비교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제3호, 2012; 하정철, “유럽연합(EU) 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개정안상의 잊혀질 권리와 현행 우리 법의 규율 체계 및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제11호, 2012; 최경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 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제상 의미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법학논총 제38권제3호, 단국대법학연구소, 2014 등.

- 5) 일반적으로는 잊힐 권리라는 용어보다는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기도 한다. 국어적으로는 잊다의 피동형은 ‘잊히다’이기 때문에 잊힐 권리가 더 정확한 용어라고

‘망각할 권리’(right to oblivion)를 기원으로 한다(프랑스어로는 the ‘droit a l’oubli’, 이탈리아어로는 the ‘diritto al’ oblio’라고 쓴다). 이 ‘망각할 권리’는 범죄자의 재활을 위해서 인정된 것으로<sup>6)</sup> 1970년대 후반 입법부와 사법부의 합작품으로 탄생하였으며,<sup>7)</sup> ‘과거에 있었던 범죄행위로부터 이제는 석방되었으며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할 과거의 사건에 침묵할 권리’라고 설명된다.<sup>8)</sup> 미디어환경의 변화 속에서 잊힐 권리의 개념도 변했거니와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잊힐 권리의 개념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도출되었다. 무엇보다 인터넷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대다수 이용자들이 정보를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하는 능동적인 프로슈머(prosumer)가 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즉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등 이용자와 지식·정보를 공유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가운데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렇다면 잊힐 권리란 무엇을 말하는가? ‘잊힐 권리’, ‘삭제할 권리’, ‘망각할 권리’, ‘목록화하지 않을 권리’, ‘기억되지 아니할 권리’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EU에서 심의된 데이터 보호 규칙에서나 EU 사법 재판소에서도 ‘잊힐 권리’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가

---

한다. 다만 잊혀지다는 비표준어나 일반인들에게는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익숙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라도 쓴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언어의 사용은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사용하는 대중인 언중(言衆)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 6) 범죄자나 범죄피해자의 기록 공개나 사건 보도로 인한 낙인효과에 대한 폐해에 대한 지적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승준, “인터넷상의 무단 개인정보 탐지 및 공개행위와 수사기관의 공보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22권제1호, 2011 등.
- 7) article 40 of the ‘Loi n° 78-17 du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and later in its effective inclusion as article 226-20 of the French Penal Code in 2000.
- 8) PINO, G., “The Right to Personal Identity in Italian Private Law: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Judge-Made Rights” In: HOECKE, M. V. & OST, F. (eds.) The Harmonisation of European Private Law. Brussels: Hart, 2000, p.237.

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주로 논의되는 잊힐 권리의 내용은 검색결과와 삭제이며, 이런 점만 보면 잊힐 권리라는 용어가 정확하지는 않다. 또 논리적으로 보면 잊힌다는 것은 피동적인 것이어서 권리주체가 그것을 결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목록화 하지 아니할 권리(right to be de-listed)라는 표현을 많이 쓰며, 이것이 오해를 줄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목록화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쉽게 검색될 수 없도록 할 권리를 말하며 이것은 ‘좁은 의미’의 잊힐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잊힐 권리도 있다. 그것은 기억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비디오 대여업자는 비디오 대여의 이용 이력 등을 사업적인 이유로 계속 축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개인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 넓은 데이터가 언제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즉 이것은 ‘개인 정보가 어디까지 기억되어야 하는가’하는 문제이며, 이것은 광의의 ‘잊힐 권리’라고 이해된다. 어쨌든 잊힐 권리의 의의에 관해서는 ‘검색 결과로부터 삭제’라는 ‘협의의 개념’을 발단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권리’라는 ‘광의의 개념’까지 광범위하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 2) 검색엔진에서 프로파일링으로 규제 대상의 진화

원래 유럽 데이터 보호 지침에 규정된 ‘삭제 권한’은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아이들이 업로드 한 데이터가 돌이킬 수없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처 하자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sup>9)</sup> 거기에서 좀 더 일반화하고 대상을 넓혀겠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리고 데이터 보호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EU 제29조 작업부회<sup>10)</sup>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옵션이 제안되어 있지만 데이터 자체를 지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링크가능성(linkability)을 제

9) 같은 취지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온라인 지우개 법(the California Eraser Law for minors)」이 있어서 아이가 정보를 업로드 할 때 제대로 주의하여 자신이 지울 수 있는 기능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은 2013년 9월에 캘리포니아 주 지사가 서명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로 미성년자에 의한 모든 소셜 미디어에 게시물 나중에 언제든지 제거 할 수 있도록 ‘삭제 버튼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10) EU 제29조 작업부회 :1995년에 유럽 의회에서 채택된 「EU 데이터 보호 지침」 제29조에 의해 설치된 개인 정보의 취급에 관한 개인의 보호에 관한 자문 기관이며, 이 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각 회원국마다의 조치가 통일 되도록 모든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거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가 등장한 초기에는 ‘데이터 자체를 지울 것인가’ 혹은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은 있는가’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와 같이 링크가능성(linkability)을 제거하는 것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잊힐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검색 엔진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정도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정보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생각할 때, 잊힐 권리의 마지막 목표는 바로 프로파일링(profiling)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잊힐 권리는 데이터 자체가 아닌 링크가능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검색 엔진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여전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즉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블랙박스에는 좀처럼 손을 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인 프로파일링에 어떤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현재의 논의 수준은 프로파일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결국 이 문제는 조만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서 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것이다.

한편, 기술 수준이나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할 때 검색엔진 다음에는 SNS가 문제될 것이라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잊힐 권리가 필요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에는 최근 십 년간 Web2.0의 흐름이 있다. Web2.0 시대에는 사용자 자신에 의한 정보 발신이 인터넷에 흐르는 정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 소셜 네트워크가 있다. SNS에 의한 개인 정보 영향이 막대할 경우 그에 대한 특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때는 링크가능성의 배제라는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예컨대 Facebook와 같은 SNS 공간에서는 검색 기능의 제공 자체가 기피되도록 법률적 규제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 정보에 미치는 영향이나 플랫폼 및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에 따라 잊힐 권리의 다른 형태 내지는 전혀 다른 개인 정보 보호 대응의 형태가 논의될 수 있다. 잊힐 권리라는 것도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현재의 사회 상황과 검색 엔진이라는 지배적인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식의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프로파일링과 같이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테 더하여 SNS가 지원한다는 구도에서는 링크가능성의 배제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 흔적을 스스로 지우거나 남의 도움을 받아 삭제했다 해도 다 지워졌다고 할 수 없다. 나도 모르는 새 다른 사람들이 내

흔적을 복제하거나 퍼 날랐을 개연성이 크다. 스마트폰 등 각종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누군가 올린 글은 대량 복사가 가능해져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공적 공간과 개인 공간의 분리하면서 공적 공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였다. 지금까지 익명으로 SNS를 이용하고 있는 정도라면 쓰레기 같은 게시물도 인내할 수 있는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프로파일링 등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익명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 공간에서도 개인정보를 어떤 형태로든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며,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종래의 대응 방법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없는 상황이 되었다.

## 2. 미디어 환경에 따른 기억과 망각의 가치 변화

‘잊힐 권리’는 디지털 환경 및 인터넷의 상용화와 더불어 개인 정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화두중 하나이다.<sup>11)</sup> 잊히는 것 즉, 망각은 적어도 디지털 내지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경험하기 전에는 사유의 과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자연스러운 배설 작용으로 이해된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망각은 쉬운 일이며, 기억은 어려운 일이었다. 반면, 디지털 시대에는 기억이 일반적인 것이 되고 망각이 예외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sup>12)</sup> 인간은 스스로 정보를 걸러내는 망각이라는 사유과정을 통해 과거에서 벗어나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인간에게 망각이 없다면 과거에 묶이게 되며 이 자유는 누릴 수 없게 된다. 디지털 기기에 수록되어 전파된 기억의 완전한 망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의 저자 V. Mayer Schoenberger는 “망각은 성가신 결합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장점이다. 우리는 잊어버림으로써 재생할 수 있고 다시 개념화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 행동할 자유를

11) Bernal, P.A., “A Right to Delete?”, *European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 2, No.2, 2011 <http://ejlt.org/article/view/75/144> 2015-6-1 방문.

12) Chris Conley, “The Right to Delete” <https://www.aaai.org/ocs/index.php/SSS/SSS10/paper/view/1158/1482> 2015-6-1 방문.

얼게 된다”<sup>13)</sup> 라고 하면서 디지털화, 저장의 저렴함, 손쉬운 검색, 글로벌의 범위 등이 삭제가 불가능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 반대의 입장에서 디지털 기억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sup>14)</sup>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기억장치의 발달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명의 이기를 경험하기 전에 인간은 두뇌에 의존하여 기억하고자 하였고, 기억하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던 끝에 얻은 결실이 바로 문자와 기록장치와 같은 기록의 도구이다. 그러나 이런 유형적 기록도구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멸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어 영원한 기억도구로 남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 등장한 디지털문명은 기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였다.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고 거의 무한정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기억장치인 것이다.

한편, 1950년대 컴퓨터의 개발과 더불어 등장한 인터넷은 정보 접근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라는 물리적 도구를 활용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순이후 1990년대 중순 이후로 인터넷은 문화와 상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전자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전화, 화상 통화뿐 아니라, 토론 포럼,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포함한 월드 와이드 웹을 아우른다. 원격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은 전 세계적인 통신망이 되었다. 이제 모든 나라의 대학·기업·개인 이용자들이 하나의 통신망 속에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통신망의 발달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작동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더 나아가 과연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과거 공동체는 소규모의 친밀한 집단을 구성하고, 개인 정보는 친

13) ‘... forgetting is not an annoying flaw but a life-saving advantage. As we forget, we regain the freedom to generalize, conceptualize, and most importantly to act.’  
MAYER-SCHONBERGER, V., 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p.118.

14) BELL, C. G. & GEMMELL, J., TOTAL RECALL : HOW THE E-MEMORY REVOLUTION WILL CHANGE EVERYTHING, New York, N.Y., Dutton, 2009.

구, 가족, 이웃 등 한정된 구성원의 기억에 의존해 존재해 왔다. 반면, 오늘날에는 개인 정보를 비롯해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보관하고 있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언론 기사의 데이터베이스는 한번 생산된 정보의 유통과 유효기간을 거의 ‘무한대’로 만들었으며,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과거의 기사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처럼 디지털화, 저렴한 저장 비용, 손쉬운 검색, 개인을 공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는 글로벌 범위 등이 ‘삭제’가 불가능한 현실을 만들었다. 아울러 개인이 정보를 생성하더라도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포털 사이트, 언론 기관 등과 같은 기업에게 있고, 온라인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용이하나 이를 삭제·폐기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결국 정보의 주체 스스로도 정보에 대한 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포털사이트 기타 정보 관리자에게 종속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데이터의 가치사슬(value chain)이 훨씬 복잡해졌다. 소소한 데이터라도 이것이 빅데이터 활용에 의해 관계형으로 연계되면(relational) 이해관계자(stakeholder)는 현저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인터넷 사회가 갖는 이익과 리스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Ⅲ. 프라이버시의 진화 속에서 잊힐 권리가 갖는 의미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고 변화한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온라인 가상공간에서는 디지털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없던 제품과 기술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면서 프라이버시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스마트 기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확산은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및 공개를 막는 데 노력해 왔다. 그러나 스마트 및 소셜 기술에서는 더 많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공개를 요구한다. 웹 2.0의 초연결 시대에 사회적 연결과 개인의 자율에 따른 정보의 개방성을 추구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와 충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프라이버시 개념의 진화과정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관점에서 잊힐 권리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프라이버시의 진화

원래 프라이버시는 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로 대표된다.<sup>15)</sup> 전통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라 하면 개인이 혼자 있을 권리를 간섭하거나, 개인의 삶을 알리고 개인에 관한 잘못된 얘기를 전파하거나 특정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함부로 쓰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또 프라이버시권은 사상의 자유, 몸에 대한 통제권, 고독을 즐길 권리, 자기 정보를 통제할 권리, 감시 받지 않을 권리, 명예, 수색과 조사를 함부로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처음에는 ① 신체적 ‘불가침’을 중심으로 타인이 간섭하지 않는 은밀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혼자 있을 자유) ② ‘소극적’으로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생활에 관한 결정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결정 프라이버시) ③ ‘적극적’으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주체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리’(정보 프라이버시)로 진화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프라이버시 개념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영위하고 발전시켜나갈 적극적 권리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

15) 원래 유럽에서 프라이버시는 기차 여행이 성행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한다. 기차가 등장하기 전에는 마차를 이용했으며 이때는 드물게 낯선 사람과 함께 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혼자 혹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기차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대면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낯선 사람과 몇 시간을 보내는 일은 건디기 쉽지 않은 일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의사에게 상담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나온 답이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말라’와 ‘책을 읽으라’였다는 것이다. 기차에서 옆에 앉거나 마주앉은 사람이 무언가를 읽는 것은 ‘방해하지 말라’란 뜻이므로 말을 걸지 말라 얘기다. 또, 굳이 얘기를 나누고 싶지 않으면 책이나 신문을 읽는 행동으로 표현하라고 했다. 독서가 여행의 따분함을 달랠 뿐 아니라 낯선 이가 말을 거는 것을 막는 역할까지 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지금도 기차역에는 어디나 신문과 책을 파는 곳이 있다.

프라이버시의 출발점이었던 ‘혼자 있을 권리’는 소극적인 권리이다. 내가 지금 혼자 있고 싶고 누구한테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은 권리라는 것이다. 프라이버시(privacy)은 라틴어인 *Privatue*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그리고 *Privatue*는 중세에 이르러 *Privyl*<sup>16)</sup>로 사용되다가 현대에 이르러 *Private*과 그 명사인 *Privacy*로 변형되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sup>17)</sup> 그런데 *Privatue/privy*는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 또는 단절, 공적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나만의 것을 뜻한다. 타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신만의 것이며 공동체가 간섭할 수 없는 은밀한 영역을 말하기도 한다. 즉, 공적 개입이 제한된 비밀스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프라이버시의 일차적인 내용이다. 더 나아가 프라이버시는 외부의 간섭 없이 오로지 자신만의 영역에서 자유로운 삶의 형식을 스스로 구성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결정 프라이버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결정 프라이버시는 여성의 피임약 사용(*Grisworld v. Connecticut*)이나 낙태(*Roe v. Wade*)와 관련된 사건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은 결혼, 임신, 피임, 성생활, 교육, 양육 등의 영역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한 대로 그 생활을 영위하며 이것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헌법적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즉 결정프라이버시는 개인이 국가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여 영위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sup>18)</sup> 끝으로 프라이버시의 가장 현재적인 모습은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 프라이버시이며 이것이 잊힐 권리의 근거가 되는 프라이버시이다. 정보 프라이버시의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16) 흥미롭게도 *privy*는 화장실이라는 뜻이 있으며, 중세성직자들은 화장실은 혼자서 책을 읽기에 좋은 곳이었기에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즉 중세성직자들은 가장 프라이빗(private)한 공간으로 화장실을 떠올렸던 것 같다.

17) 노동일·정완, “사이버공간상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경희법학* 제45권 제4호, 2010.

18) 김문경,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와 잊혀질 권리”, *철학논총* 제72집 제2권, 세한철학회는문집, 2013, 325면.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며, 이것은 반드시 은밀한 것이거나 기타 사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이다.<sup>19)</sup>

## 2. SNS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잊힐 권리

디지털화된 개인에 관한 정보와 일상정보가 인터넷망을 통하여 손쉽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으로의 변화는 과거의 프라이버시 개념을 변화시켰고, 개인정보의 관리와 보호의 의미를 강화시켰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확산되면서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손쉽게 개인정보가 수집되면서 정보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 받기보다는 정보객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정보를 지킬 필요가 절실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손 안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증가와 인터넷의 진화 및 다양한 서비스의 개인화 진전 등으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SNS로 자신의 일상을 외부에 공개하고 소통하는데 익숙한 젊은이들을 일컬어 ‘모든 것을 공개하는 세대(Tell-all generation)’라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에 친숙한 디지털 세대들은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활용하는 것에 관대한 편이다. 게다가 사람들의 개인별 니즈를 만족시키는 스마트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SNS를 중심으로 스스로 정보를 발신하는 패러다임은 사람들에게 즐겁고 편리한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침투해 있다. 하지만 SNS를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공용의 언론 공간에서 자유롭게 발언 할 수 있지만 반면, SNS를 활용하면 할수록 프로파일링에 의해 개인 정보가 침해되어 가는 것도 어쩔 수 없다.<sup>20)</sup>

19) 현재 2005.5.26. 99헌마513 판례집 제17권제1집, 681면.

20) 물론 SNS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공적, 사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외부 제공 및 공개 폭을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높다. 즉 개인이 자기정보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공개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SNS 환경에서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전통적인 사생활의 의미는 매우 축소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결국 이용자 자신의 선택과 책임에 달렸다는 인식을 갖는 것은 여전히 중

전술한 바와 같이 검색 엔진을 대상으로 한 잊힐 권리는 데이터 자체의 제거가 아니라 데이터에 링크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현실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데이터 자체는 여전히 잔존함으로써 ‘프로파일링에 대한 대응’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글이나 야후와 같은 검색엔진이 SNS를 만나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정보를 쏟아 낸다. 여기에 조각 조각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조합하고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기능이 합해지면 정보주체인 인간의 인격마저도 재조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세계에서는 정보주체로서의 결정권과 통제권은 무색해질 가능성이 많다. 눈앞에서 삭제한 정보도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다시 등장할지 모른다. 이런 이유로 프로파일링은 잊힐 권리가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였다. 즉 인터넷의 이용 스타일이 SNS로 전환된 가운데 잊힐 권리와 프로파일링에 대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프로파일링이라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 내지 프로파일링하는 상황의 모든 것을 명백히 밝힌다는 것은 조직 내부의 다양한 정보 처리 및 영업 비밀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EU 지침에서는 데이터 처리(processing) 자체에 규제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의 대안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논의 등을 살펴보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결정’을 어떻게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데이터로 인하여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면 동명이인(同名異人)인 범죄자가 있다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제공된 정보만으로 판단하면 불성실한 인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든지, SNS의 이력을 더듬어 보면 어린 시절에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든지 등과 같은 프로파일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파일링 자체는 부정확(incorrect)하거나 관련이 없는(irrelevant) 개인 데이터 처리이며, EU 데이터 보호 지침상의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프로파일링에 기초한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취업 할 수 없거나 해고되거나 혹은 갑자기 보험료가 너무 높아질 수 있는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

요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한 대응은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이다. 사이버 캐스케이드(cyber cascade)<sup>21)</sup>와 같이 명시적으로 드러내 놓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서 보이지 않게 프로파일링하고 있는 사람은 ‘잠재적인 명에 훼손’을 저지르는 것과 같아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인간을 프로파일링에 하는데 정보원으로서 검색 엔진 및 SNS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링 정보의 입구로서 검색 엔진에 대해서는 잊힐 권리가 클로즈업되어 있는데, 그 다음은 SNS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또한 프로파일링의 출구 측, 즉 그것을 기반으로 한 결정에 의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즉, 프로파일링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어떤 방법으로 입수된 것인가 하는 정보의 입구와 프로파일링을 기초로 내린 결정에 관한 정보의 출구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프로파일링 자체는 기본적으로 추론이기 때문에,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의 태도로 실행될 수 있다. 또 프로파일링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어서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여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프로파일링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결과가 도출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극한의 권리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정보에 관한 행위, 즉 사람이나 조직 사회가 어떻게 정보를 얻고, 어떻게 처리하고 처리 한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지 또한 거기에 따라 어떤 행동을 결정할지와 같은 정보와 관련된 가치 사슬의 구조는 항상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전체 구조를 파악하여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높은 것은 어느 부분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면 혁신(innovation)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흐름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와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식을 항상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21) 사이버 캐스케이드란 인터넷상에서 특정 의견이나 생각 또는 행동이 급속히 퍼져 나가는 현상 혹은 이렇게 하여 생긴 의견이 같은 다수가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가운데 점점 더 과격해 지는 것을 말한다.

## IV. 잊힐 권리,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 1. ‘누구’의 기억으로부터 ‘무엇’을 잊게 할 것인가?

잊힐 권리는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영구적인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이다. 이처럼 생산은 쉬운 반면 삭제와 파기가 용이하지 않은 인터넷 환경에서 잊힐 권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삭제 범위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잊힐 권리만 중시하다 보면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 이 상충을 어떻게 해결하거나 조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잊힐 권리를 논함에 있어서는 ‘누구의 기억’으로부터 ‘무엇을’ 잊게 할 것인가를 중요한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지워졌으면 좋은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기억되어야 할 필요도 있으며, 적정하게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해 ‘잊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도 고려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관련 법규가 있는데 잊힐 권리를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고 잊힐 권리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잊힐 권리는 내가 수집을 동의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이기도 하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법한 정보가 ‘잊힐 권리’에 밀려 반복적으로 삭제될 경우 정보 접근성 차단과 ‘알 권리’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의 권리만 중시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인터넷에는 ‘승자의 기록’만 남게 되거나 법 권력을 보유한 소수의 사람들만 좋아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잊힐 권리와 알 권리, 언론의 자유, 기억할 자유 등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이익형량을 통하여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sup>22)</sup>

또한 이렇게 보면 잊힐 권리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이며 구체적 실현의 한 모습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잊힐 권리의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는 잊히기를 원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공개를 동의하기 어려운 부

22) 같은 취지, 지성우, 앞의 논문, 39면; 이민영, 앞의 논문, 75면.

정적 정보에 한정되는 것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경우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권리가 추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나 보호영역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잊힐 권리는 정보통신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든 Web2.0 시대에 들어 비로소 부각되는 정보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결국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개발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보다는 진일보한 권리라고 생각된다.<sup>23)</sup> 이런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범위에 포섭시켜 보호를 하기 보다는 이 보다 더 나아간 새로운 인격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sup>24)</sup>

## 2. 잊힐 권리와 승자의 기록

잊힐 권리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잊힐 권리는 대중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인터넷 근간을 무너뜨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가장 큰 역할은 정보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개방과 공유로 누구나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대부분 무료로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주식 정보를 얻기 위해 과거에는 거래소나 증권사를 찾아가거나 신문을 구독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원하는 업체를 검색하기만 하면 10년이 넘는 자료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잊힐 권리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공인이나 기업체들은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정보만 인터넷에 남겨놓을 가능성이 높다. 잊힐 권리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업체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사의 불리한 정보에 대해 삭제 요청도 가능해진다. 특히 잊힐 권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검색을 제한하는 ‘인명검색배제권’으로 확대될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본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고용해 삭제 차단시킬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결국 잊힐 권리가 보장되더라도 ‘힘’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사용할 가

23) 같은 취지,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잊힐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법 제10권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11, 14면.

24) 유충호, “새로운 인격권으로서 잊힐 권리의 보장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15권제1호, 홍익대법학연구소, 2014, 39면.

능성이 높으며 그들이 삭제하고자 하는 기록들만 삭제가 되는 ‘승자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3. 기억할 권리의 반론

“장관에 내정된 다음에 ‘아, 이런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 싫어서 지운 것들도 있습니다.” 2014년 7월 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과거 그가 트위터에 올렸던 이념 편향적인 글들을 네티즌들이 찾아내 논란이 되었다. 청문회 직전에 2012년부터 SNS 상에 올린 글들 중 문제가 될 만한 상당수를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에 퍼져나간 기록을 다 주워 담지는 못했다. 만약 잊힐 권리가 남용된다면 정 전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패나 정경유착에 관련돼 있었거나, 그런 것에 대한 정보는 프라이버시로 보호될 수 없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가 잊히고 싶다는 이유로 정보들이 삭제된다면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포괄적인 잊힐 권리가 보장될 경우 공인의 ‘경력 세탁’에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구글은 영국 프로축구 경기에서 판정 논란을 일으킨 심판과 관련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기사 링크를 삭제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링크를 되살렸다. 또, 서울의 한 병원이 과거의 의료사고 논란과 관련된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연관 검색어를 없애달라고 포털 측에 요구했다. 이 사건의 심의를 맡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병원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해당 검색어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불의의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잊힐 권리가 확대되면 앞으로 이런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잊힐 권리에 대항한 ‘기억할 권리’를 주장하는 쪽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잊힐 권리가 자신이 싫어하는 과거를 타인의 기억으로부터 삭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인터넷의 정보들은 개인의 정보이기도 하지만 공공의 성격을 띤 역사적 기록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선조들의 낙서가 그 시대의 생활상과 여론을 유추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되듯, 현재 인터넷에 개인들이 남긴 각종 기록, 심지어 약

성 댓글까지도 미래에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역사적 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공공의 이익 등에 부합하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운영 세칙을 두고 있다.

#### 4. 기억과 삭제의 균형

정보의 기억과 삭제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삭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쌓아 놓지 말고 없애자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제는 양자의 균형이 깨질 경우 인간 존엄성의 주체인 인간은 다른 정보 이용자나 정보처리자에 의하여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여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정한 수준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인터넷 열린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설립자인 지미 웨일스가 기억할 권리 옹호에 가장 적극적이다. 위키피디아는 ECJ 판결에 따른 구글의 조치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에 직면해 있다. 구글은 판결 이후 위키피디아로 연결된 링크 50개를 삭제하고, 앞으로 1억 페이지 이상의 위키피디아 링크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웨일스는 이를 두고 “신중 정보검열”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그는 “인터넷 정보 공유활동이 부당한 검열 요구로 제약받지 않도록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권리장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잊힐 권리에 대한 논쟁은 2007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불거졌던 논쟁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 인터넷실명제와 정부의 삭제 명령권을 ‘인터넷 검열’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잊힐 권리를 옹호하는 쪽은 과거의 인터넷 기록이 주홍글씨가 되어 개인의 인생을 옅어낼 위험성을 우려한다. 현행 제도로는 개인이 디지털 세탁소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보의 확산력이 강한 인터넷의 특성에 대응하기가 역부족이란 것이다. 인터넷을 채우고 있는 공해에 가까운 불필요하거나 유해한 정보들을 정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기억할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선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다면 특정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이를 통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반론한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한해온 검열 주체가 국가에서 개인들로 바뀔 뿐이란 것이

다. 급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sup>25)</sup> 잊힐 권리의 법제화는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잊힐 권리의 보장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삭제할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V. 잊힐 권리의 제도 구상 : 누가,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가?

### 1.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 정확하지만 적절하지 않은(correct but irrelevant)

잊힐 권리에 대한 제도구상을 하는 경우 잊힐 권리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또 누가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인정받은 잊힐 권리는 완전히 삭제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으며, 예를 들어 그 사람을 표현하는 정보로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더라도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no longer relevant)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위 판결

25) 빅데이터시대에는 가능한 한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 사용하고자 하며, 정부의 정책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제공한 사진 한 장이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일으킬 모르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데이터를 내놓기 위한 심리적 장벽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삭제할 권리를 제대로 인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세상에 흐르는 데이터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데이터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서비스라든지, 계층화된 레이어의 데이터는 계속 남아 있지만 어떤 레이어의 데이터는 만료일을 정하여 사라지게 하는 서비스든지 등 기술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수집할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빅데이터(Distributed Big Data)’(도쿄대 하시다 고이치(橋田浩一) 교수 제안)에 대한 논의도 있다. ‘모이지 않는 빅데이터’란 의료 및 건강 등 민감한 정보가 있어 정보 수집에 의한 정보 유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산 관리하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공유함으로써 저비용 낮은 위험으로 빅 데이터를 실현하는 구성을 말한다. 이미 사업자들은 시끄러운 데이터는 아무리 모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에서 스페인 남성은 수십 년 전의 사회 보험료 미납에 따른 압류·경매 정보를 지워 달라는 것으로 현재는 이러한 미납 상황은 없으므로 과거의 정보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좋지 아니한 기록이 훗날 인생에 남아있을 그 사람의 프로파일과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확하긴(correct)하지만 적절한(relevant)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보가 남아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주장과 남아 있는 정보에 의해 부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주장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EU 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적어도 모든 것을 남겨 두는 것이 우리의 정보 공간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신중한 판단을 통하여 이 정보를 보이지 않게 할 권리를 인정할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확하기는(correct) 하지만 적절한(relevant) 것은 아니라는 것은 해석의 폭이 매우 넓을 수 있다. 따라서 잊힐 권리도 그때마다 판단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실효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정확하지만 적절하지 아니한 정보를 삭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는 검색 엔진은 명예훼손 내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링크를 지워 달라는 청구가 있을 때는 명백히 악의적이거나 명확하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소송으로서 청구되었을 때 비로소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하여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하면 이번 EU 사법재판소의 잊힐 권리에 대한 판결은 그것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와 관계없이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원래 정보가 그 단체에서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검색 결과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데이터보호지침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삭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절차적인 부분에서 고액의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법원에 호소할 필요 없이 삭제의 요구 사항 만 충족하면 검색 엔진 그리고 각국의 개인 정보 보호 감독관에 간단한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 신속히 삭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거의 판단 기준은 아직까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적 부분이 대폭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제거 청구는 양적인 의미에서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Google과 Bing 등도 현재 유럽 시장에만 제거 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 판결에 따라 EU에 관한 한 삭제 요청에 따른 재판 절차라는 성가신 절차가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받아 들였다고 이해된다.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절차적인 경로를 크게 열었다는 것이 이번 EU 사법 재판소 판결의 핵심이다.

## 2. 누가 판단할 것인가?

잊힐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누가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정보주체, 검색엔진 기타 서비스 제공기업, 국가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잊힐 대상을 결정할 주체와 관련하여 과연 정보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주체를 판단주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생각건대, 일차적 판단은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 자신이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오로지 기업에게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업이나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공정한 기관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ADR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또 비용이 가해지지 않도록 법원에서 파견된 판사가 검색 엔진, 그리고 당사자나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공정하게 내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삭제 여부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검색 엔진 것만으로 혹은 국가만으로는 할 수 없으며, 꼭 어느 일방이 실시해야하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투명·신속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다양한 권리와 가치와의 비교를 적절하게 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비용부담은 누가할 것인가?

검색 엔진과 함께 큰 역할자로 통신사업자가 있다. 통신 사업자는 검색 엔진 쿼리(quarry)<sup>26)</sup>와는 다른 형태로 사용자의 동향을 살펴서 프로파일링할 수 있다. 앞으로 사업으로서 프로파일링을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수혜자는 누구인가 등이 문제이다. 일차적으로는 기업은 리스크 없이(risk free) 개인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투명성의 책임과 추

26) 쿼리(quarry) : 정보 수집에 대한 요청에 쓰이는 컴퓨터 언어.

급은 사업자 측에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잘못 되었다거나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본인이 원래 축적에 동의한 데이터에 대해 나중에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새로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는 논의되어야 한다. 삭제를 제기하는 소비자 측이 일정한 비용을 지불 할 필요가 있는가? 한 번 만든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별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운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든다. 예를 들어 검색 결과에서 ‘이 링크를 지워 달라’고 말한 것을 지우는 행위는 일견 굉장히 쉽게 보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용을 검토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 균형을 감안하고 한편, ADR까지 거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 상당한 비용부담이 있다. 게다가 그 정보가 어느 시점에서 부적절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절한 것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이클은 관리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매우 다양한 경우가 상정될 수 있어서 어느 하나를 제시하는 것은 어렵고도 의미 없는 일이다.

잊힐 권리에 한정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삭제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의 감소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그러한 위험과 자신이 무엇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서서비스를 받게 되는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자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 측의 알고자 하는 노력이나 능력의 함양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동시에 사업자 측이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Privacy by design)<sup>27)</sup>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노력이야말로 삭제해야 하는 정보가 정보사회에 만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이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쳐서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사업자가 이득을 보고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제되어 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회 전체의 프라이버시 비용(privacy cost)을 절감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27)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폐기 단계까지의 전체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 및 정책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을 일컬어 Privacy by Design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Information & Privacy Commissioner로 재직중인 Ann Cavoukian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VI. 맺으면서

잊힐 권리는 새로운 권리라기보다는 프라이버시권의 새로운 발현이다. 따라서 도입 여부나 적용여부가 전혀 새로운 논의는 아니다. 우리 법제에서 잊힐 권리가 직접적으로 법령상 등장하지는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삭제·정정요구권(법 제36조) 또는 처리정지요구권(법 제37조)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삭제 내지 반복 내용 제재 요청권(법 제44조의 2), 이용자의 정보파기 요청권(법 제30조) 등이 있어 잊힐 권리의 법제화도 수정과 변경은 요구될 지라도 새로운 입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최근 수년간의 잊힐 권리에 관한 국내외의 논쟁은 잊힐 권리가 정착할 수준과 관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 측면과 관련 기본권간의 조정과 균형 측면에서 매우 유효하고 적절한 논의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제도가 충실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범적 논의를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수준이 적절히 도달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즉 제도와 기술은 어느 하나가 앞서 가서는 안 되며, 양자가 모두 발맞추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잊힐 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제도만으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정보 컨트롤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보면 빅데이터시대에서는 개인에 의한 자기정보통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여 시스템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Viktor Mayer Schoenberger는 잊힐 권리의 구현과 관련하여 정보의 만료일(expiration dates on information)을 둘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데이터에 어떤 형식으로 만료일을 정하는 것은 매우 훌륭하고 흥미로운 방법이면서 정보에 대한 보다 우선적인 통제 방법이 된다고 하는 지지견해도 있다.<sup>28)</sup> 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정보의 생명주기(life cycle)를 정하여 일정기간 후에는 자동적 소멸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

28) Bernal, P.A., "A Right to Delete?", *European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 2, No.2, 2011 <http://ejlt.org/article/view/75/144> 2015-6-1 방문.

다. 왜냐하면 지식이나 정보는 가능한 남아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는 기본적으로 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후에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소멸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힐 권리의 판결에서도 영원히 삭제한다는 것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 이런 예도 들 수 있다. 어떤 정치인이 과거에 한 행위가 현재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지우고 싶을 수 있으나, 사회 이데올로기의 변화로 나중 어떤 시대에 자신을 유익하게 평가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재생시키고 싶을 수도 있다. 프라이버시는 상황에 따른 의존도가 높고 제3자 관점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대적 개념이자 권리이다. 인간의 사고와 상황은 시시 때때로 변할 수 있으므로 삭제한 데이터의 복구방법을 법률로 정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 참고문헌 ▣

- 김문정,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와 잊혀질 권리”, 철학논총 제72집 제2권, 세한철학회논문집, 2013.
- 노동일·정완, “사이버공간상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경희법학 제45권 제4호, 2010.
-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법 제10권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11.
- 박정훈,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프라이버시”, 공법학연구 제14권제2호, 2013.
- 유충호, “새로운 인격권으로서 잊힐 권리의 보장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15권제1호, 홍익대법학연구소, 2014.
- 이민영, “이른바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법학논총 제20권제1호, 조선대법학연구원, 2013.
- 이승준, “인터넷상의 무단 개인정보 탐지 및 공개행위와 수사기관의 공보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22권제1호, 2011.
- 전은정·염홍열, “잊혀질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EU법 비교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제3호, 2012.
- 정상기,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과학기술법연구 제18권제3호, 2012.
- 정영화, “헌법상 정보프라이버시로서 잊혀질 권리”, 법학논고 제39집, 경북대법학연구원, 2012.
- 정진숙, “정보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에 관한 논의: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 제48호, 2015.
- 조소영, “잊혀질 권리: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공법연구 제41권제2호, 한국공법학회, 2012.
- 지성우,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론적 고찰”, 언론중재 2011 여름호, 2011.

최경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 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 제상 의미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법학논총 제38권제3호, 단국대법학연구소, 2014.

하정철, “유럽연합(EU) 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정안상의 잊혀질 권리와 현행 우리 법의 규율 체계 및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제11호, 2012.

함인선,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고찰-EU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2012.8.호.

홍명신, 정보의 웰다잉을 향한 시도-잊혀질 권리의 국제동향, 언론중재 2011 여름호, 2011.

황해륙, “잊혀질 권리에 대한 소고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44집, 경북대법학연구원, 2013.

BELL, C. G. & GEMMELL, J., TOTAL RECALL : HOW THE E-MEMORY REVOLUTION WILL CHANGE EVERYTHING, New York, N.Y., Dutton, 2009.

Bernal, P.A., “A Right to Delete?”, European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 2, No.2, 2011  
<http://ejlt.org/article/view/75/144> 2015-6-1 방문.

Chris Conley, “The Right to Delete”  
<https://www.aaai.org/ocs/index.php/SSS/SSS10/paper/view/1158/1482> 2015-6-1 방문.

MAYER-SCHONBERGER, V., 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PINO, G., “The Right to Personal Identity in Italian Private Law: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Judge-Made Rights” In: HOECKE, M. V. & OST, F. (eds.) *The Harmonisation of European Private Law*. Brussels: Hart. 2000.

<Abstract>

## Undeleted Privacy and Risk of Internet Society

Lee, Ho-Yong

The modern man determines and judges based on more data than ever before. After sleeping contacts with the new information and data pouring like a flood, while enjoying the benefits of data lives in an rapidly changing era from day to day. However, it is not easy to predict now what I posted some results in posts to come forward to me. The future is always innovative,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legal right to delete any way because unpredictable. In this contex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ppeared neither strange nor awkward anymore.

In this paper I considered how to distribute the Benefit and Risk with the Internet society. I would like to start with the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as the background of this thesis topic and according to it value change oblivion and memory, meaning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erms of evolving privacy.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called variously as the right to delete, the right to oblivion, the right to disappear, it refers to the right to not be listed in narrow sense that means avoid linkability and the Right not be remembered in a broad sense that means To what extent and How long personal data should be remembered. Until now as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it stayed excluding linkability to the target search engine but now profiling is emerging as increasingly regulated. In particular, in the media environment the SNS is supporting Profiling regulation will be an important social issue just beyond the level of simple restriction. Most importantly it should not remained the only the winners record, it is important to let to be forgotten From the memory of

whom, What memories(datum) and Balance of Oblivion and Memory!! And with regard to institutions, the first, related to Judgment-Criteria for Deletion, Correct but Irrelevant information could be forgotten, second, related to Judgment-Subject for Deletion, Information subject or information provide company, Country, etc. could be considered, the fair third organization could not help doing it. Third, related to Deleting Cost, doing delete looks easy but it must consider the balance of the various fundamental rights as freedom of expression, right to know, freedom of the press and must go through the ADR. And so this is very much costly, with regard to cost if it is difficult to present any one bearing the cost because it can be expected to be in a wide variety of cases. But in the big data era, because the self information control by individuals will not be expected, it is necessary to have the view that it is necessary to transfer the responsibility of deletion to the operators and systematically can be supported. And at the same time need to continue to respond based on the principles of Privacy by design by operators.

<Key Words>

Linkability(링커가능성), Correct but Irrelevant(정확하지만 적절하지 아니한), Judgment for Deletion (삭제여부 판단), Balance of Oblivion and Memory(망각과 기억의 균형), Privacy by Design(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의 원칙)

